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의안 번호	20263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2201839	여기구의원	2024.07.17.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2026.03.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 법안소위(2026.04.15.)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 법안소위(2026.04.22.) 상정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 법안소위(2026.05.19.)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 반영 폐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02361	장동혁의원	2024.07.2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02504	성일중의원	2024.08.0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203790	허종식의원	2024.09.09.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04232	황명선의원	2024.09.2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04433	김원이의원	2024.09.3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2205322	이재관의원	2024.11.06.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2205390	김소희의원	2024.11.0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05414	임이자의원	2024.11.1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2205809	박해철의원	2024.11.2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07506	허성무의원	2025.01.1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07743	서천호의원	2025.01.2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09652	이철규의원	2025.04.08.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10349	박지혜의원	2025.05.02.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13521	한정애의원	2025.10.10.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2214561	김정호·서왕진 ·정혜경의원	2025.11.26.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법안 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6.03.30)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2217615	안호영의원	2026.03.19.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 법안소위(2026.04.15.)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 법안소위(2026.04.22.) 상정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 법안소위(2026.05.19.)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 반영 폐기)

나.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 5. 19.)에서 위 1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6. 5. 19.)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폐지 절차, 전력계통 영향분석,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폐지지역 대체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의 수립·승인 절차와 전력계통 영향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전직지원, 협력업체 사업재편 지원,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특례, 지역활성화 사업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 기업·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을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관련 기업·노동자·지역사회의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협력업체, 대체산업, 전력계통 영향분석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는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폐지 일정, 노동자 고용안정 및 재배치 계획,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 등이 포함된 폐지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 및 전력정책

-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 폐지지역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를 두고, 폐지지역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지계획이 승인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및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을 폐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1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 대체사업자의 노동자 고용유지·신규채용 시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발전사업자 및 협력업체의 사업재편·업종 전환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발전사업자와 기존 협력업체 간의 수의계약 특례 및 노동자 재배치 우선 지원 의무화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 대체산업 발굴·육성, 자금 보조·융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대부·매각,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우선 지원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대응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

터 제20조까지).

※ 소수의견

위원회 대안은 원안의 핵심 취지인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를 위한 구체적 목표 연도 설정 및 정부의 폐지 권한 규정을 누락하고 있음. 이는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본연의 입법 목적을 크게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자에게 조기 폐쇄가 자발적 선택 사항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공할 소지가 있으므로 본 대안에 부동의함(서왕진 위원).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있는 기업,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탄화력발전소”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발전시설로서, 석탄을 주된 연료로 하는 발전시설을 말한다.
2. “폐지지역”이란 제5조에 따라 폐지계획이 승인되어 상업운전을 중단하였거나 중단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석탄화력발전소에 상주하며 상시적으로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자와 연료의 하역 등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담하여 주기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협력업체”란 석탄화력발전소에 정기적으로 물품·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대체산업”이란 석탄화력발전산업을 대체하여 폐지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6. “폐지지역 대체사업자”란 폐지지역에서 대체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전력계통 영향분석”이란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대체사업 시행 등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인한 고용 및 지역경제 영향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및 폐지지역 지원

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고용 및 지역경제 영향 완화의 적정성에 관하여 지역사회 및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절차

제5조(폐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는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지계획(이하 “폐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지 일정 및 대상 설비
2.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고용유지) 및 재배치 계획
3. 재생에너지사업 등 대체사업 의향 또는 부지·설비·항만·계통설비

등 재활용 계획

4.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

5. 주민·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6. 폐지대상 시설 해체계획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지계획의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석탄화력발전소가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발전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로서 그 중 둘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함께 폐지하려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폐지계획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을 거친 후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지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폐지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전력수급 안정성과 고용·지역경제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전환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발전사업자가 폐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지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발전사업자, 협력업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지계획의 수립 및 검토 절차, 지역경제영향조사 및 의견수렴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력계통 영향분석 및 안보전원발전기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지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력계통 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 전력수급 및 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하거나, 신뢰도 연장 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된 석탄화력발전기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안보전원발전기 및 신뢰도 연장운전에 대한 지정 기준, 지정절차, 보상 및 지원, 운영기준, 지정기간, 연장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석탄화력발전소 전환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지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지지역 지원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설비의 재활용 및 대체산업의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시·도의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고용안정 및 산업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활성화 사업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여건에 따른 폐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폐지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주민·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전환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 및 절차, 협의체의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

지환경부에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폐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노동,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산업·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련 경험이 풍부한 3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노동,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산업·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별 연합단체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의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전환 협의체) ①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폐지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대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역전환 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시행계획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폐지지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지계획이 승인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등을 폐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지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거나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지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폐지지역지원

제12조(노동자 고용안정 및 전직 지원) ① 발전사업자 및 협력업체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으로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사업 등 재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예정일이 6년 이내인 경우 또는 승인된 폐지계획의 폐지 예정일이 6년 이내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계약 방식에도 불구하고 기존 협력업체와 수의로 계약을 하거나 종전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재배치·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퇴직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 대체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이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 전환배치지원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사업자 또는 협력업체가 업종전환이나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2. 시설자금,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 보조·융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의 대상·범위·조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을 위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사업자가 부지, 항만, 계통설비 등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발전소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기반시설을 재활용하여 대체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에 해당 투자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발전소 기반시설을 재활용하여 대체사업을 추진하거나 발전소^Y내 부지를 활용해 대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소 기반시설을 재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업체 사업재편 등) ① 국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협력업체의 사업재편 또는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사업자 및 협력업체의 업종전환, 경영합리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상환 유예, 기한 연장, 이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지역활성화 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의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2. 재생에너지산업 등 대체산업의 발굴·육성
3. 창업 촉진, 투자 유치 및 기존 산업기반의 전환 활용 지원
4. 그 밖에 지역활성화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 사업과 대체산업 육성 및 산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 협력업체 또는 폐지지역 대체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 대체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지지역 대체사업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계약의 방법 외에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재생에너지 보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재생에

너지 보급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원의 확보 및 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지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재원

제4장 보칙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상업운전이 중단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는 이 법 시행 전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상업운전이 중단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도 적용한다.

제3조(시행 후 2년 이내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 예정일이 도래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